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

(문형주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27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년 11월 15일

발 의 자 : 문형주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생환, 강성언, 장인홍,
박기열, 송재형, 허기희,
유 용, 이숙자, 김제리,
이종필, 김진영, 김진철
의원(12명)

1. 제안 이유

- 서울특별시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그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전적·사후적 조치를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 내용

- 가. 학교폭력예방 등에 대하여 정의함(안 제2조).
- 나.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부여함(안 제3조).
- 다. 학교폭력예방 등을 위해 매년 계획을 수립·시행함을 규정함(안 제4조).
- 라.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연구 활동을 규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.
- 마. 학교폭력해결을 위한 자문기구를 둠(안 제7조)

- 바.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8조 및 제9조).
- 사.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함(안 제10조 및 제11조).
- 아. 학교폭력 피·가해학생간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을 위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2조).
- 자. 학교폭력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를 위하여 협력기관을 구축함(안 제13조).
- 차. 불이익처분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4조)
- 카.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5조).
- 타.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6조)

3. 참고 사항

- 가. 관계 법령 :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.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상처를 치유하여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자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법’이라 한다)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.

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‘교육감’이라 한다)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,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, 가해학생의 선도과 교육, 가해자와 피해자간 분쟁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의 장(이하 “학교장”이라 한다)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즉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4조(추진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(이하 ‘추진계획’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
2.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시행
3.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분석
4. 피해학생의 보호 및 치유 지원
5.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육·재활을 위한 지원
6. 학교폭력 분쟁조정을 위한 인력 양성
7. 피·가해 학생의 분쟁조정 지원 사업
8.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학교폭력 예방활동)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방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.

1.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
2. 학교와 학교폭력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간 연계 지원
3. 분쟁조정을 위한 지원 및 시책 추진
4. 학교폭력 예방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
5.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학교폭력 예방연구)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한 사례 연구
2.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자료 개발
3.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·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

② 교육감은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 기관 등에 연구 활동 등을 위탁할 수 있다.

제7조(자문기구) 교육감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학교폭력 사안조사 지원, 학교폭력으로 분쟁이 발생한 학교의 분쟁해결,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(피해학생 보호 지원) 교육감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상담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
2. 피해학생의 치유기관에 대한 지원
3. 학생·학부모 동반 프로그램 운영 지원
4.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
5.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9조(가해학생 조치 지원) 교육감은 학교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가해학생 및 보호자 상담기관 및 특별교육 프로그램 안내
2.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 확대
3.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운영 지원
4. 그 밖에 가해학생 조치에 필요한 사항

- 제10조(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)**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의 분쟁조정역량 향상을 지원한다.
- ③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학생, 교직원,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- ④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등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- 제11조(학교폭력 실태조사)** ① 교육감은 학교 내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기별로 1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-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③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 관련 연구·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- 제12조(갈등조정)** 교육감은 피·가해학생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을 위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참여하는 교우관계회복프로그램, 치유캠프 등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13조(협력기관 구축)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.

제14조(불이익처분금지) 교육감은 학교와 교원에 대한 평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폭력의 발생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제15조(예산 등 지원)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재원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,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,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사업, 분쟁조정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
제16조(표창)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,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」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